사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2. 2. 26

나. 제 출 자 : 사천시장

다. 회부일자 : 2002. 2. 26(의안 제12호)

2. 제안사유

○ 표준하수도사용조례기준(환경부훈령 제509호 , 2002. 1. 14)의 개정에 따라 주민 편 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불합리한 일부조항을 개정하는 것임.

3. 주요골자

가. 원인자부담금의 일부조항 개정(안 제15조) 원인자 부담금 산정을 위한 기준 단가를 매년 2월말까지 시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

나. 중가산금 징수조항 신설(안 제16조)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및 원인자부담금 등의 체납시 중가산금 징수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동 조례 개정안 중 제15조의 원인자부담금은 환경부의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안을 받아들여 개정하였고, 제16조 중가산금 규정을 신설한 것은 2001. 3. 28 개정된 하수도 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정하는 경우 중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조항을 적용하여 개정한 것으로
- ㅇ 상위법 체계에 맞추어 개정한 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됨.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없음

6. **토론요지** : 없음

7. 심사 결과 : 원안의결